

30. 형사범죄 법정형의 과중여부에 관한 사건들

(마약소지죄·야간흉기휴대협박죄·뇌물죄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 판례집15-2(하), 242; 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판례집 16-2(하), 446; 헌재 2006. 12. 28. 2005헌바35, 판례집 18-2, 589>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들은 책임과 형벌조항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바, 헌법재판소는 마약소지죄 및 야간흉기휴대협박죄(이하 협박죄라고만 한다) 가중처벌 사건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뇌물죄 가중처벌 사건에서는 책임과 형벌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마약소지죄 가중처벌 사건에서 청구인 A는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매도목적으로 소지한 죄로 기소되자 매도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뇌물죄 가중처벌 사건에서 청구인 B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자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 A, B는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협박죄 가중처벌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위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마약소지죄 가중처벌사건과 협박죄 가중처벌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위 각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및 처벌조항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은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및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가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형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지키지 못하였다.

마약소지범 가중처벌 조항은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며, 매수와 매도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또한 협박죄 가중처벌 조항은 “협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이유로, 행위 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고, 그 결과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뇌물죄 가중처벌사건에서는 재판관 8인 중 4인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므로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뇌물죄에 대한 특가법상의 가중조항은 법정형이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고, 수뢰액만을 중시하여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뢰행위의 유형 및 부정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뢰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부정처사없는 수뢰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여 놓았으며, 포괄일죄로 의율되는지 혹은 경합범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지나치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으므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마약소지범 가중처벌 조항은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매매목적소지죄 등을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고, 협박죄 가중처벌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삭제되었다.